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등·초본상 등재되어 있는 자녀)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가구원수 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수 산정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우선 공급 - 미달 시 기타지역(대전시 1년 미만,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거주자에게 공급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는 모든 특별공급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타 특별공급의 낙첨자와 함께 추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1. 02. 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우선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 ~ 9,648,256원	9,222,468원 ~ 11,350,728원	9,222,468원 ~ 11,350,728원	9,611,742원 ~ 11,829,835원	10,111,431원 ~ 12,444,837원	10,611,120원 ~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병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아래 ①~③ 중 해당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 10. 28. 이후 발행분]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정보취약계층만 해당)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 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단, 1961. 01. 01 이전 출생자는 1961. 01. 01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반드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부 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 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발급(1년 이상 연속 등재 확인)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입 및 기간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동반 체류 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10. 28.)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 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출서류(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모집공고일(2021년 10월 2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